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74호(號) 1929년(昭和 4) 4월 4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9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특정(特定)함.

1929(昭和 4)년 4월 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- 1 수하인(受荷人) 영동군(永同郡) 농회(農會)
- 1 품 목(品 目) 짚
- 1 발 역(發 驛) 구포(龜浦), 진영(進永)
- 1 착 역(著 驛) 금호(琴湖)
- 1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1 운 임(運 賃) 보통운임(普通運賃)의 5할(割) 감(減)
- 1 기 간(期 間) 1929(昭和 4)년 4월말일(末日)까지
- 1 조 건(條 件) 본(本) 운임(運賃)은 경상북도지사(慶尙北道知事)가 한해구제부업용(旱害救濟副業用) 가마니[叭] 원료품(原料品)인 것을 증명(證明)한 것에 한(限)하여 이것을 적용(適用)함.